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남진삼 의원)

의안 번호	114
----------	-----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12일

발 의 자 남진삼 의원

찬 성 자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의원

1. 제안이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로 읍·면장으로 규정(안 제5조)
-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 제6조~제7조)
- 다. 안내문 게시 등(안 제8조)
- 라.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조~제10조)
- 마.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불입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3. 4. 24. ~ 5. 9.(14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3. 3. 29. ~ 4. 5. 아래표 참조.

조례안	검토안(올림픽체육과)	의회 의견-부분수용
<p>제2조(정의)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p>	<p><수 정> 4. “관리부서”란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부서로서 읍·면장을 말한다. →하천변은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하여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의 혼선을 방지하고자함</p>	<p>○ 안 제2조 관련 관리부서를 읍·면장으로 하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며</p>
<p>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p>	<p><수 정>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읍·면에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총괄부서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p>	<p>○ 안 제7조 관련 설치기준 추가사항인 제4호(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 내용을 수용함</p>
<p>제7조(설치기준)</p>	<p><추 가> 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자 하며, 야외운동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p>	<p>○ 안 제9조 관련 안전점검 실시 횟수는 6개월에 1회 이상을 유지함.</p>
<p>제9조(안전점검 등) 1. 군수는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수 정> 1.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인 읍면에서 민원업무 이외에 상하반기 야외운동기구 점검은 업무가 과중하며, 상반기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개보수나 철거를 이행하는 것이 적정함</p>	<p>○ 별지서식은 기존내용을 포함하며, 기구명칭 기재에 있어 표에 따른 명료성을 갖추고자 조례안을 유지함</p>

<p>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p>	<p><추 가> 2.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 장은 반드시 관리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 정> 3.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과거 무분별한 실·과·소의 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들의 설치 및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음.</p>	
<p>별지 서식</p>	<p><수 정> 별지 서식 수정 →기존 읍면에서 사용하는 서식 활용 (설치형태, 조치사항, 세부사진 확인 등 점검 시 필요한 항목 기재) ※ 별표: 의원 발의안 서식 유지</p>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평창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부서로서 읍·면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별·연령·장애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부서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및 야외 운동기구”를 삭제하고, 끝부분에는 단서인 “다만,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제25조제3항은 삭제한다.

[별표]

야외운동기구 안내문 (제8조 관련)

이용 중 불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락처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1. 4. 13., 2022. 1. 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

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제목개정 2015. 2. 3.]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8. 3.]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5. 8. 3.>

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본조신설 2012. 7. 1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남진삼의원
연락처	(033) 330 -2505